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된 구미시 도봉 국민체육센터 위탁을 통해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 무 명: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의5
 - 「지방공기업법」 제1조 ~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 제22조의2

- 위탁사무: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
- 시설개요
 - 시설명: 도봉국민체육센터
 - 소재지: 구미시 도량동 92
 -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93m²
 - 층별시설

층 별	면적(m ²)	주 요 시 설	비 고
지하 1층	24.06	기계실	
지상 1층	156.35	통신실, 사무실	주차 17면
지상 2층	608.4	스쿼시장(4면)	
지상 3층	604.68	다목적체육관(배구)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구미시설공단)
- 소요예산: 719,478천 원(2024년)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세입	-	115,680	115,680	115,680	115,680	462,720
	소계(a)	-	115,680	115,680	115,680	115,680	462,720
세출	노무비	388,298	399,947	411,946	424,304	437,033	2,061,529
	경비	228,750	235,612	242,681	249,961	257,460	1,214,464
	일반관리비	37,023	38,134	39,278	40,456	41,670	196,560
	부가세	65,407	67,369	69,390	71,472	73,616	347,255
	소계(b)	719,478	741,063	763,295	786,193	809,779	3,819,808
합계(a-b)		△719,478	△625,383	△647,615	△670,513	△694,099	△3,357,088

※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방안 연구용역 산출 결과('23. 3.)
 ※ 물가반영률 연 3%적용

4. 참고사항

○ 도봉국민체육센터 사진대지

□ 위 치 도



□ 조 감 도



○ 위탁비용 산출내역

(단위 : 천원/년)

구 분		도봉국민체육센터	비 고
인 건 비	직 접 인 건 비	388,298	
	소 계	388,298	
경 비	보 험 료	40,154	
	복 리 후 생 비	3,169	
	수 도 광 열 비	26,730	
	전 력 비	43,332	
	연 료 비	48,600	
	수 리 수 선 비	32,582	
	소 모 품 비	18,019	
	지 급 수 수 료	16,164	
	소 계	228,750	
순 운 영 비		617,048	
일 반 관 리 비		37,023	순운영비의 6%
운 영 비 합 계		654,071	
부 가 가 치 세		65,407	운영비의 10%
연 간 위 탁 비 용		719,478	운영비 + 부가세

※ 2023년 운영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수입은 2022년 이용인원 기준으로 산정

※ 코로나-19이전 이용인원 기준 수지비율은 66.1%(올림픽기념생활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2024년 1월 개관 예정인 도봉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위탁을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시설규모에 스퀘시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시설 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현재 구미시는 공공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례 근거가 없으나 지방자치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동의를 받아오고 있음. 향후 집행기관 및 관련 소관부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의회 동의 절차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